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

발 의 자: 김춘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·석, 박춘선, 박환희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유만희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은림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한·신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36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23년 6월 5일 '국가보훈처'가 '국가보훈부'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'국가보훈처장'을 '국가보훈부장관'으로 개정함.(안 제36조제1항제7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”를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”로 한다.

제26조제5항제14호 중 “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”을 “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7호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.

제46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업 등”이라 한다)라 함은 「외국인 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.</p>	<p>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외국인 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 호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생 략)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 1. ~ 13. (생 략) 14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·⑦ (생 략)</p>	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 제3호----- ----- 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 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</p>	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--- ----- ----- -----</p>

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 
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  
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
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 
수 있다.

가. 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  
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 
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  
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 
인 사업

나. ~ 사. (생략)

2.·3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 
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  
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 
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  
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
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  
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7.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,  
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  
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
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.

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  
1조의2제1항-----

나. ~ 사. (현행과 같음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  
-----  
----- 국가보훈부장관-----

<p>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</p> <p>8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(생략)</p> <p>제46조(시 건축위원회의 심의)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-----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~ ⑧ (현행 제39조의2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</p> <p>제46조(시 건축위원회의 심의) -- -----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----- ----- --.</p>
---	--

문서번호

2023081700000012

## 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김춘곤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08.17.

회신일 : 2023.08.21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##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#### 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한 조례안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	☎ 02-2180-7954
	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**